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법률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심사 전

참고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업무규정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물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u>② <신 설></u>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업무규정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다.</u>